

##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,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

제2조의2제8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

제13조의3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

제1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(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업금융을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·가공·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

별표5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거래정보

### (1) 개인

등록정보	등록기관	등록기준		이용기관
		대상주체	등록시기	
<b>마. 기타 금융거래 관련</b>				
기타 금융거래 현황(거래 기관명, 종류 <sup>1)</sup> 등 포함)	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	해당 개인	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	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, <u>신용정보회사</u>

주1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

## 6. 공공정보

등록정보	등록기관	등록기준		이용기관
		대상주체	등록시기	
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, 소셜벤처기업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의 인증·인 가·인정·지정·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	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 는 영 제21조제2 항의 기관 중 해 당 등록정보 보유 기관	해당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공공기 관과 협의하 여 정함</li> <li>○ 영 제21조제2 항에 따른 기 관 보유정보 등록 시기는 신용정보집중 관리위원회가 정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 제21조제2 항의 기관</li> <li>○ 신용정보회사</li> </ul>
<u>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</u> <u>제43조에 따른 성실경 영평가에 관한 정보</u>	(상동)			

## 8.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

등록정보	등록기관	등록기준		이용 기관
		대상주체	등록시기	
<u>금융거래 안심차단신청 현황</u>	<u>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</u>	<u>해당개인</u>	<u>등록사유발생시</u>	<u>영 제21조의제2항의 기관 및 신용정보회사</u>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신용정보의 범위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영 제2조제8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⑥ · ⑦ (생 략)</p> <p>⑧ 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3조의3(겸영업무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</p>	<p>제2조의2(신용정보의 범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,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</u></p> <p>⑥ ·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</u></p> <p>제13조의3(겸영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업무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5조의2(정보집합물의 결합 등) ① ~ ⑤ (생 략)     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      ⑦ ~ ⑨ (생 략)</p> <p>제26조의5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)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</u></p> <p>제15조의2(정보집합물의 결합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⑥ -----      -----      ----- 경우(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---.     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      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의5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)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기업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·가공·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</u></p>
---	--